

[제정 2000년 06월 01일] [1차 개정 2007.04.12][2차 개정 2011년.03월]
[3차 개정 2011년 11월][4차 개정 2011년 12월][5차 개정 2013년 04월]
[6차 개정 2016년 03월][7차 개정 2018년 01월][8차 개정 2018년 02월]
[9차 개정 2019년 01월][10차 개정 2019년 02월][11차 개정 2020년 02월]

문산수익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

대외협력복지부

문산수익고등학교

문산수익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

[제정 2000.06.01] [1차 개정 2007.04.12][2차 개정 2011년.04.07][3차 개정 2011년 11.24]
[4차 개정 2011년 12.23][5차 개정 2013년 04.12][6차 개정 2016년 03.28][7차 개정 2018년
01.23][8차 개정 2018년 02.28][9차 개정 2019년 01.23][10차 개정 2019년 02.27][11차 개정
2020년 02.28]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 및 설치)

본 위원회는 문산수익고등학교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라 칭하고 문산수
익고등학교에 설치한다.

제2조(목적)

본 규정은 문산수익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3조(위원 정수 및 구성) [2차 개정 2011년 04.07][6차 개정 2016년 03.28][7차 개정 2018
년 01.23]

- ①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해당연도 3월 1일 현재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. 본교의 당해
연도 위원정수는 10명으로 하고, 학부모위원 4명, 교원위원 4명,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
다.
- ②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
제4조(위원의 겸임) [10차 개정 2019년 02.27]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.
[2019.01.23 개정] 다만, 병설학교 교장은 소속 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의 선출 시기)

- ①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.
- ②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.
- ③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.(단,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
1/4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보궐 선출을 하지 않을 수
있다.

제5조의2(선출관리위원회) [2007.04.12 신설]

-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.
-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, 선거인명부 작성, 위원의 후보자 등록, 선거공보, 투·개표,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되고, 당해 연도 보궐선거 시에도 운영할 수 있다.
-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5인으로 구성하되, 학부모회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, 위원장, 부위원장, 간사 각 1인을 호선한다.
- ④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5인으로 구성하되,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, 부위원장, 간사 각 1인을 호선한다.
- ⑤ 선거사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.

제6조(학부모위원의 선출) [2011.12.23 개정]

-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총회에 참석한 참석 학부모들의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하되, 학부모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총회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 우편투표, 전자적 방법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)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. [2020년 02.28 개정]
- ② 학부모위원 선출은 임기개시 10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선거공고, 입후보 등록, 선거공보 통지 등의 시기는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.
- ③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발표를 할 수 있다.
- ④ 당선자 결정은 득표순으로 하되,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- ⑤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(중도 사퇴로 인한 경우 포함)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, 부족인원은 재 선출공고를 한다.

제6조의2(교원위원의 선출) [2007.04.12 신설]

-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비밀투표로 2배수를 선출하여 학교장에게 추천하고, 학교장은 추천된 후보 중에서 교원위원을 위촉한다.
- ② 투표는 투표자 1인당 선출직 교원위원정수의 2배수만큼 기표할 수 있다. 단, 위원정수 미만의 기표도 유효하다.
- ③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개시 10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선거공고, 입후보등록, 선거공보 등의 시기는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.
- ④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발표를 할 수 있다.
- ⑤ 당선자 결정은 득표순으로 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 선거 결과는 학교 게시판 등에 게시한다.
- ⑥ 입후보자가 위원정수의 1배수 이하인 경우는 무투표당선으로 하고, 1배수 초과 2배수 이하일 경우에는 투표로 순위를 정하여 학교장에게 추천한다.
- ⑦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미만인 경우에는 재 선출공고를 한다.

제6조의3(지역위원의 선출) [2007.04.12 신설]

- ① 지역위원은 학교장이 주관하는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 되, 투표는 투표자 1인당 지역위원정수만큼 기표할 수 있다. 단, 정수 미만의 투표도 유효 하다.
- ②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추천서에 의해 지역위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.

제7조(위원의 임기)

- ①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[2013.04.12. 개정]연임할 수 있다.
- ② 위원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.
- ③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제8조(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)

-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.
-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 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.
-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 이 경 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-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위원장은 **단임으로 한다. 다만, 학생수 2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.** [11차 개정 2020년 02.28]
-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
-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 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-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·진행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직무 를 대행한다.

제9조(위원의 자격 상실)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 다만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다.

- 1.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때
- 2.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·휴학·전학 및 퇴학한 때. 단, 졸업의 경우 임기만료 시까지 그 자격을 유지한다. [2007.04.12 개정]
- 3.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
- 4.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
- 5.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
- 6. 기타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자격 상실을 의결한 경우
- 7.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6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·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

경우

제10조(위원의 의무)

-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,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.
- ③ 위원은 본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,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,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.
- ④ 학부모위원회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.

제 3 장 기능 및 자문

제11조(기능)

운영위원회는 초·중등교육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, 학교법인 수석학원정관(이하 “정관”이라 한다)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자문한다.

제12조(건의서 제출 등)

-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사항 등에 건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,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, 위원장은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
- ② 학교장은 위 제①항에 의해 제출된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장에게 통보하고, 운영위원장은 이를 운영위원회에게 통지한다.

제 4 장 회의 운영

제13조(회의 소집)

-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, 정기회는 6월과 12월, 익년 1월 연 3회 개최하고,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.[2007.04.12 개정][2018.02.28 개정]
- ②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/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.(단,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)
- ③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.

(추가) (심의사항 등)

- ① 운영위원회는 “초.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.
1.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
 2. 수학여행, 학생야영수련(학생수련활동)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,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
 3.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 4.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
- ②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.
- ③ 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·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제14조(안건의 제출 요구)

운영위원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/4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

제14조의2(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) [2018.02.28 신설]

- ①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.

제15조(서류 제출 요구)

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제16조(의사 정족수) [2007.04.12 개정]

-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[2007.04.12 삭제]
- ③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.

④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,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.

제16조의2(공청회) [2007.04.12 신설]

-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해 학부모·지역주민 또는 학식·경험이 있는 자(이하 ‘진술인’이라 한다)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-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·일시·장소·진술인·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.

제17조(회의 공개)

- ①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② 회의 개최 시는 가정통신문, 학교게시판, 학교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최일자,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생[2011.11.24 개정], 일반 학부모,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.
- ④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.
- ⑤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. [2007.04.12 신설]

제18조(회의록 작성)

- ① “초.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 3”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.
- ② 제1항의 회의록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
-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·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, 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이를 보고해야 한다.

제19조(소위원회 설치)

- 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 다만, 급식소위원회[2007.04.12 개정]는 반드시 설치하고, 이의 운영을 위해 별도로 급식소위원회 규정을 제정한다. 또한, 예·결산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 학교발전기

금 운용계획 수립, 집행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강화한다. [2013.04.12. 개정]

-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,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, 학생,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-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.

제20조(운영 경비)

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경비,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21조(간사)

운영위원회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.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
제 5 장 학교발전기금 등

제22조(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)

- ① 학부모들로부터 일정액의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아 학교운영을 지원한다. 단, 학교운영지원비의 모금액,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되, 일률적으로 각출하도록 하고, 교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수당 지급액은 교육감이 정한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.
- ② 학부모 이외의 인사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여 「학교발전기금」을 조성할 수 있고, 조성방법 및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- ③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- ④ 학교운영지원비와 기금의 운용 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.
- ⑤ 회계업무는 학교장에게 위탁관리하고, 일반회계와 구분 계리 한다.

제23조(운영세칙)

본 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07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.[2007.04.12 신설]
이 규정은 2011년 11월 24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 [2011.11.24 개정]
이 규정은 2011년 12월 23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 [2011.12.23 개정]
이 규정은 2013년 4월 16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 [2013. 04.12 개정]
이 규정은 2016년 3월 28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 [2016. 03.28 개정]
이 규정은 2018년 1월 23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 [2018. 01.23 개정]
이 규정은 2018년 2월 28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 [2018. 02.28 개정]
이 규정은 2019년 1월 23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 [2019. 01.23 개정]
이 규정은 2019년 2월 27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 [2019. 02.27 개정]
이 규정은 2020년 2월 28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 [2020. 02.28 개정]

제2조(경과조치)

- ① 이 규정이 최초 시행되는 당해 연도의 위원 임기는 위원회 임기 개시일로부터 다음 연도의 위원회 임기 개시일로 한다.
- ②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구성된 학부모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본다.